이사회 규정

제 정 : 1968. 9. 5
개 정 : 1994. 6.10
1998. 5.15
2000. 3.17
2002. 4.19
2012. 4.20
2015. 1. 2
2015. 3.23
2021. 5.14
2024. 2.13
2026. 5.14

한솔홀딩스주식회사

이사회 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 적)

이 규정은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범위)

법령 또는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3 조 (임 무)

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,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한다.

제 3 조 2 (권 한)

1.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한다.
2.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,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,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3. 제3조2의 제2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 업무의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제 4 조 (구 성)

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.

제 5 조 (의 장)

1.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.
2. 의장이 유고시에는 이사인 사장, 부사장, 의장이 지정한 상무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2 장 회의소집 및 진행

제 6 조 (종류 및 소집)

1.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나눈다.
2. 정기이사회는 연 6회 이상, 분기별 최소 1회 이상 개최한다.
3. 임시이사회는 긴급한 부의사항이 있을 때에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.
   그러나 이사 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제 7 조 (결의방법)

1.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써 한다.
   다만, 상법 제397조의2(회사기회유용금지) 및 제398조(자기거래금지)에 해당하는
  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2 이상의 수로 한다.
2.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 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3.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는 이사 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4. (삭제)
5.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
  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한다.
  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참석한 것으로 본다.

제 8 조 (부의사항)

이사회의 부의할 사항은 별표(1)로 이를 지정한다.

제 9 조 (위 임)

1.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
   이사회의 결의로써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.
2. 대표이사는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의 범위 내에서 소관 업무 담당이사에게
   해당사항의 집행을 대행시킬 수 있다.

제 9 조 2 (이사회 내 위원회)

1.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
  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2.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 단,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
3. 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은 각 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따른다.
4. 위원회의 권한, 운영 등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
  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.

제 10 조 (사후승인)

1. 긴급을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
   대표이사가 이를 집행하고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전말을 보고하고 추인을 얻어야 한다.
2. 전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
   대표이사가 책임을 진다.

제 11 조 (이사 아닌자의 출석)

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사 아닌 자도 회의에 출석하여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.

제 11 조 2 (전문가 조력)

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 12 조 (간 사)

1. 이사회에 간사를 두고 인사(총무)부서장이 이에 임한다.
2. 간사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각 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의 사무전반을 담당한다.

제 13 조 (의사록)

간사는 이사회의 안건, 경과 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이사와 그 반대이유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
제 14 조 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6. 5. 14. 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전자주주총회)

별표1 1.(2)-2 규정은 2027. 1. 1. 부터 시행한다.

별표1

이사회 부의안건 및 보고사항

부의안건 및 보고사항	관련 근거	위임여부		
		사전 승인	위임	보고
1.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				
(1) 주주총회의 소집	상법362조	○		
(2)-1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허용	상법368조4	○		
(2)-2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 (이하 "전자주주총회"라 한다)의 개최 여부 및 전자주주총회 개최 시 그 운영 및 절차에 관한 사항	상법542조의14 상법542조의 15	○		
(3) 영업보고서의 승인	상법447조2	○		
(4) 재무제표의 승인	상법447조	○		
(5) 정관의 변경	상법433조	○		
(6) 자본의 감소	상법438조	○		
(7) 회사의 포괄적 주식 교환·이전, 해산, 합병, 회사의 계속 등	상법360조2	○		
(8)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양수	상법374조	○		
(9)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 위임,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,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	상법374조	○		
(10)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	상법382조	○		
(11) 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	상법417조	○		
(12)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면	상법400조	○		
(13) 주식배당 결정	상법462조	○		
(14)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	상법340조2	○		
(15) 이사의 보수	상법388조	○		
(16) 회사의 최대주주(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)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	상법542조9	○		
(17) 법정준비금의 감액	상법461조2	○		
(18)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	중요 사항	○		

부의안건 및 보고사항	관련 근거	위임여부		
		사전 승인	위임	보고
2. 경영 및 재무에 관한 사항(~계속)				
(1) 회사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	중요 사항	○		
(2) 연간 경영계획	중요 사항	○		
(3) 연간 투자계획	중요 사항	○		
(4) 신규사업	중요 사항	○		
(5) 자금 차입, 공시/신고 관련 사항 (별표2)	유가증권공시 규정7조	○		
(6)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, 운영 및 폐지	상법393조2	○		
(7)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	상법393조2	○		
(8)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	상법393조2	○		
(9)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	지배구조원 평가지침		○	
(10)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, 준법통제기준의 제·개정 및 폐지	상법542조13	○		
(11) 간이주식교환, 간이합병, 간이분할합병, 소규모주식교환,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 등의 결정	상법360조9 外	○		
(12)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	상법526조3항	○		
(13) 지점, 공장, 사무소, 사업장의 설치·이전 또는 폐지	상법393조1항	○		
(14) 임원의 선임 및 해임	중요 사항		○	
(15) 이사회규정,임원인사규정 등 중요한 사규, 사칙의 제·개정 및 폐지	중요 사항	○		
(16)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	상법389조	○		
3. 이사 등에 관한 사항				
(1)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	상법398조	○		
(2)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	상법397조2	○		
(3) 이사의 경업 및 동종업계 타회사 임원의 겸임	상법397조1항	○		

부의안건 및 보고사항	관련 근거	위임여부		
		사전 승인	위임	보고
4. 기타				
(1) 중요한 소송의 제기와 화해와 관한 사항	중요 사항	○		
(2)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	상법340조3	○		
(3) 기타 법령, 정관에 정한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	중요 사항	○		
5. 보고 사항				
(1)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	상법393조2			○
(2)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	상법391조2 제2항			○
(3)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	외부감사법8조			○
(4) 준법지원인의 준법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결과	상법542조13			○
(5) 분기별 재무실적	중요 사항			○
(6) 임원 조직의 제정 및 개폐	중요 사항			○
(7)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	중요 사항			○

- 위임사항은 대표이사 책임하에 시행하고, 차기 이사회에서 그 내용을 추인받도록 함.

별표2

자금차입, 공시/신고사항

- 위임사항은 대표이사 책임하에 시행하고, 차기 이사회에서 그 내용을 추인받도록 함.

자금차입, 공시/신고사항	위임여부		
	사전승인	위임	보고
1. 자금차입			
(1) 운영자금(은행,CP 발행,보험사등)의 조달 및 연장		○	
(2) 회사채 발행	○		
(3)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회사채발행에 관한 대표이사 위임	○		
2. 공시/신고 관련 사항			
(1)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5(대규모법인의 경우 1,000분의 25) 이상에 해당하는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 정지, 단일판매(공급) 계약의 체결 및 해지, 제품에 대한 수거·파기 공장의 생산 중단 또는 폐업되거나 해당 상황의 해소		○	
(2) 증자 또는 감자	○		
(3) 주식의 소각	○		
(4)-1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(신탁계약 등의 체결, 해지 또는 연장을 포함)	○		
(4)-2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의 작성 및 승인	○		
(5) 주식분할 또는 병합(자본감소를 위한 주식병합은 제외)	○		
(6) 액면주식의 무액면주식으로 전환	○		
(7) 전환사채, 신주인수권부사채, 교환사채 또는 증권예탁증권(외국에서 이와 유사한 증권 또는 증서가 발행되는 경우를 포함)의 발행	○		
(8) 해외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 상장폐지	○		
(9) 주권 상장폐지	○		
(10) 주식매수선택권 부여	○		
(11) 자기자본의 100분의 10(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5) 이상에 상당하는 신규시설투자, 시설증설 또는 별도공장의 신설	○		
(12)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5(대규모법인의 경우 1,000분의 25) 이상의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	○		

자금차입, 공시/신고사항	위임여부		
	사전승인	위임	보고
2. 공시/신고 관련 사항(~계속)			
(13) 자기자본의 100분의 5(대규모법인의 경우 1,000분의 25) 이상의 출자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	○		
(14) 자기자본의 100분의 10(대규모법인의 경우 1,000분의 5) 이상에 해당하는 단기차입금의 증가에 관한 결정		○	
(15) 자기자본의 100분의 5(대규모법인의 경우 1,000분의 25) 이상의 채무인수 또는 채무면제	○		
(16) 자기자본의 100분의 5(대규모법인의 경우 1,000분의 25) 이상의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	○		
(17) 자기자본의 100분의 5(대규모법인의 경우 1,000분의 25) 이상의 타인에 대한 선급금 지급, 금전의 가지급, 금전대여 또는 증권의 대여	○		
(18) 주식배당, 현금·현물배당(분기배당, 중간배당 포함)	○		
(19) 주식의 포괄적 교환, 이전	○		
(20) 영업양수도(자본시장법 상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대상 중요한 영업양수도 포함, 합병(간이합병, 소규모합병 포함), 분할(물적분할 포함)	○		
(21) 회생절차 또는 채권은행 관리 절차의 개시·종결·폐지 신청, 파산신청 및 경영정상화 약정 체결	○		
(22)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 (사업목적 변경, 독립이사의 선임·해임, 감사의 선임·해임, 집중투표제의 도입·폐지 등)	○		
3. 공정거래위원회 공시(공정거래위원회 공시규정 제4조)			
(1) 계열회사 및 특수관계인과 자기자본(별도기준) 5%(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) 또는 100억원 이상의 자금, 유가증권, 자산거래	○		
(2) 동일인 및 친족출자 계열회사와 자기자본(별도기준) 5% (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) 또는 100억원 이상의 상품, 용역거래	○		